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7-54
--------	--------	-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의회장

2017. 5. 31.

제 목 :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제출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, 「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『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』 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다 음 -

1. 출석기간: 2017.6.13(화) ~ 6.21(수)
2. 출석대상: 군수 및 관계공무원
3. 출석장소: 행정사무감사장
4. 출석이유: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·청취

붙 임: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1부. 끝.

발의자 강 철 우 의원 등 10인

의안번호	제 2017 - 54호
의결연월일	2017. 5. 31. (제 226회)

의결사항

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

발의자	강철우 의원 등 10인
발의연월일	2017. 5. 31 .

출석 요구서

거창군수 귀하

거창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, 『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출석기간: 2017.6.13(화) ~ 6.21(수)
2. 출석대상: 군수 및 관계공무원
3. 출석장소: 행정사무감사장
4. 출석이유: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·청취 등

2017년 5월 31일

거창군 의회 의장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4.18.] [법률 제14768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자치제도과) 02-2100-3814

-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**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
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4.>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
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
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
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
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
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
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
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4.>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
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
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17.1.1.] [대통령령 제26882호, 2016.1.12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자치제도과) 02-2100-3814

- 제43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**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
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
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
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
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
고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
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-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(의회사무과) (시행일 : 2013.04.10)

- 제 9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**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·서류제출일·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10.10.6>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2010.10.6>
-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<전문개정 2010.10.6>(개정 2011.11.07)
-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,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 (1994. 9. 12 조례 제1331호) <개정 2010.10.6>
-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(1994. 9. 12 조례 제1331호)(개정 2007. 12. 17)(개정 2008. 1. 14)<개정 2010.10.6>